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배터리 공장 화재사고 등으로 위험물저장·처리시설의 화재 안전성 확보가 강조됨에 따라, 위험물저장·처리시설의 외벽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 배터리 공장 등 위험성이 큰 용도의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생략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0. ○○. ~ 12. ○○.)

3) 행정규제 : 규제 강화

국토교통부령 제 호

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

일부개정령안

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6항 본문 중 “제5호”를 “제5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”으로, “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”를 “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마감재료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,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해야 한다. 다만,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마감재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(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)를 사용할 수 있다.
2. 영 제61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해야 한다.

부 칙

신 · 구조문대비표

-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건축물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)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1.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(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)의 신청(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)
 - 2.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(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)
 - 3.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(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)
 - 4.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·인가·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

현행	개정안
제24조(건축물의 마감재료 등) ① ~ ⑤ (생략)	제24조(건축물의 마감재료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(단열재,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로 사용해야 한다. 다만,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마감재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(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)를 사용할 수 있다.	⑥ ----- ----- 제5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----- -----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마감재료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<삭 제>
<신 설>	1.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

⑦ ~ ⑫ (생략)	<u>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해야 한다. 다만,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마감재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(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)를 사용할 수 있다.</u> <u>2. 영 제61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해야 한다.</u> ⑦ ~ ⑫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	---